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절차 폐지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2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절차 폐지(안 제12조)	2
[참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출연(연) 원장 임명 현황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3.

다. 회 부 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 12조).

Ⅲ. 검토의견

1.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절차 폐지(안 제12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기관 원장을 재선임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재직 중인 원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모 절차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생략)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 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¹⁾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은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결정된 후보자 중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임면함 ([참고] 최근 5년간 출연(연) 원장 임명 현황).

출연(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에 선임 또는 재선임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원장을 선임하려는 경우 이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모집 또는 추천 중 임명 방식을 결정함.

①공개모집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공개모집 응모자 중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3명 이내의 후보자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²⁾하고, ②추천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장 추천위원회’가 3명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42조(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원장을 공개모집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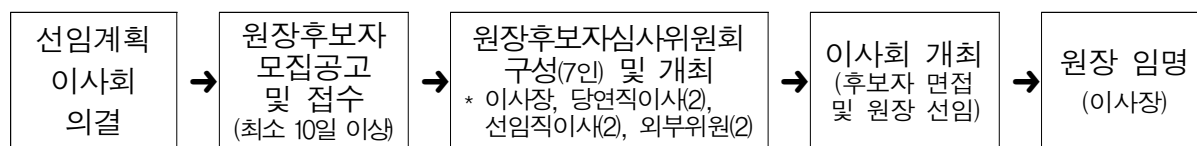
⑦ 심사위원회는 응모자 중 3명 이내의 원장후보자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하고, 심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

⑧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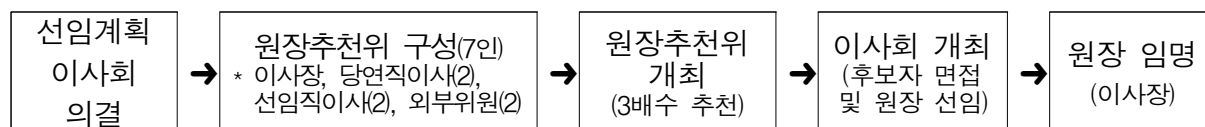
이내의 후보자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³⁾함.

이사회는 공개모집·심사 또는 추천을 거쳐 결정된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의 의결함.

< 원장 선임 절차 (공개모집) >



< 원장 선임 절차 (추천) >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대신 종전 원장을 재선임하려는 경우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우수’등급 이상⁴⁾이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의결을 거쳐야 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43조(원장추천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원장을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장추천위원회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정)

제10조(원장후보자 추천) 추천위는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배수 이내의 원장후보자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에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출연(연) 원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재선임 절차 없이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장 선임 방식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재선임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원장이 재선임된 사례는 아래와 같이 3건⁵⁾에 불과할 정도로 원장 재선임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장 재선임 사례 >

원장	연구기관명	당초 임기	재선임 착수일	이사회 의결일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4.3.13. ~ 2017.3.12.	2017.1.12.	2017.3.3.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8.7.9. ~ 2021.7.8.	2021.8.10.	2021.8.13.
장해춘	(부설)세계김치연구소	2021.8.30. ~ 2024.8.29.	2025.4.28.	2025.5.14.*

※ 부설연구소장은 소장선임위원회 의결일자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

같은 기간 동안 재선임 기준을 충족함에도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지 못해 원장이 재선임되지 못한 사례는 8건임.⁶⁾

5) 2014년 이전에는 총 19명이 공모절차를 통해 재선임된 바 있음.

6) 원장 재선임 기준이 충족되었으나 재선임 의결이 부결된 사례는 아래 8건임(부설기관 포함)

원장	연구기관명	당초 임기	임기만료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4.1. ~ 2022.3.31.	2022.12.13.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2019.4.1. ~ 2022.3.31.	2022.3.31.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0.2.24. ~ 2023.2.23.	2023.12.7.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0.7.20. ~ 2023.7.19.	2024.3.26.
최효진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20.9.28. ~ 2023.9.27.	2023.11.14.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	2020.11.20. ~ 2023.11.19.	2024.4.21.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1.3.23. ~ 2024.3.22.	2024.8.30.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1.4.9. ~ 2024.4.8.	2024.11.2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

이처럼 재선임 절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재선임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재선임 제도 자체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요건이 기관평가 결과에 연동됨에 따라 출연(연) 평가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으며, 2026년부터는 기관장 임기와 관계없이 매년 평가하도록 평가 체계가 개편된다는 점에서 연구현장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재선임이 빈번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비해 재선임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재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임.

출연(연)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원장은 연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거치는 것보다는 재선임이 간소한 절차로 기능할 수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출연(연) 원장이 임명된 현황을 보면 추천에 의한 경우가 전무하여 25건 모두 공개모집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원장 후보자 추천 제도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속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 또한 원장 재선임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⁷⁾에도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선임 제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36

물」 제12조제6항에 따라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2015년 이후 원장이 재선임 제도를 통해 연임한 사례가 전혀 없음.

참고 최근 5년간(2021 ~ 2025년) 출연(연) 원장 임명 현황

연 번	원 장	연구기관	임명일자	추천 방법
1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1.3.23.	공개모집
2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	2021.4.9.	공개모집
3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1.4.9.	공개모집
4	한석윤	한국철도연구원	2021.4.9.	공개모집
5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2021.4.26.	공개모집
6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2021.8.17.	공개모집
7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12.23.	공개모집
8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12.14.	공개모집
9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2022.12.14.	공개모집
10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2023.1.13.	공개모집
11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2023.3.27.	공개모집
12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3.5.11.	공개모집
13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3.6.5.	공개모집
14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3.6.19.	공개모집
15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3.12.8.	공개모집
16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	2023.12.8.	공개모집
17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4.3.27.	공개모집
18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	2024.4.22.	공개모집
19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4.4.22.	공개모집
20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2024.11.1.	공개모집
21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4.11.27.	공개모집
22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11.27.	공개모집
23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5.3.14.	공개모집
24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5.5.19.	공개모집
25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5.5.19.	공개모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11.)

※ 부설기관(녹색연,국보연, 김치연, 독성연)의 사례는 제외한 것임